

코로나19바이러스 대응 기간동안 시민평등권 보장

“생활물품유통, 신청지원서 처리, 그리고 기타 구조 및 지원 활동”에 관련된 연방 시민평등권법률, Robert T. Stafford 재난구조 및 비상사태법 (Stafford법), FEMA, 주, 지역, 자치부족, 및 미국영토 (SLTT) 협력기관, 그리고 비정부 재난구조 지원기관들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성별, 연령, 신체장애, 영어능숙도, 또는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 없이 평등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해야한다].”¹ 시민평등권 법률 및 지역 권한에 대한 효력이 지속되고 비상사태 기간동안 이러한 효력이 중단되지 않는다. “더우기, FEMA는 전례없는 코로나19바이러스 대응 기간동안 동정심, 정직, 공평 그리고 존중과 같은 우리의 핵심가치들을 모든 미국민들을 지원함에 있어 적용합니다.” 라고FEMA 청장Pete Gaynor는 밝혔다.

FEMA의 시민평등권실(Office of Equal Rights: OER) 은Stafford법규 308항 및 309항, 시민평등권 제 6조(Title VI), 재활법률 504항, 연령차별법, 특별 명령 13166호, “능숙한 영어에 제한적인 사람들이 정부 지원에 접근하는 것을 향상,” 및 특별명령12898호, “환경적인 공평성” 등을 준수하고 FEMA의 외부지향적 시민평등권 책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²

Stafford 법규에 의거 FEMA는 SLTT 협력기관들에게 운용상의 협조, 재정 및 기타 연방 지원을 제공한다. FEMA는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 기간동안 시민평등권에 관련된 기대와 참여에 있어 본 기관의 SLTT협력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최선의 노력을 제공한다.³

효과적인 의사소통 접근

- 텔레비전에 방송되는 모든 기자회견에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카메라 화면 또는사회활동격리(소셜 티스턴싱)시에는 방송 화면안에 수화통역관이 등장하도록 한다.

¹ Stafford 법률 308항, 미국헌법 42 조 5151항(42 U.S.C. § 5151). 다음 법률도 참조 미국헌법 42 조 206.11(c)항(44 C.F.R. § 206.11(c) (Stafford 법률에 의거 기관 및 정부는 비차별과 관련된 규정 준수의 의도를 보장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을 명시함).

² 동일항:; Stafford 법률 309항, 미국헌법 42 조 5152항 (42 U.S.C. § 5152); 1964년 시민평등권 6조(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헌법 42 조2000d항 이하 참조(42 U.S.C. § 2000d et seq.), 1973년 재활법률 504항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미국헌법 29조 794항 (29 U.S.C. § 794); 1975년 연령차별법(Age Discrimination Act of 1975), 미국헌법 42조 6101항 이하 참조(42 U.S.C. § 6101 et seq.); 특별명령13166호, 능숙한 영어에 제한적인 사람들이 정부 지원에 접근하는 것을 향상, [특별명령13166호](#); 특별명령12898호, 환경적 공평성, [특별명령12898호](#).

³ FEMA는 어떠한 비정부 단체, 기관 또는 서비스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3자에 의해 주장된 요구는 FEMA에 의해 독립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FEMA

- 현장중계시에는 자막을 제공하거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화면에 있는 배경정보에 대해 기타 방법이나 음성 설명을 제공한다;
- 사회활동격리로 인해 직접적인 보조 지원이나 서비스의 제한성을 고려하면서, 모바일에 대한 단계별 안내 또는 공공서비스 안내방송을 통해 다른지역 시험검사 장소를 제공하며, 시험검사 사이트에서 수화가 필요한 개인들을 위해 영상원격통역 (VRI)의 사용을 도모한다.
- 직접적 (가능할 경우) 혹은 원격적으로 유저격리로 수화통역관 서비스 및 지적장애인들을 돕기위한 그림문자 등을 포함하여 임시 병원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접근을 준비한다. 청각장애자, 청각 곤란자, 청각/시각장애자, 언어장애자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가진 비정부기관 연합에 의해 코로나19바이러스 기간동안에 설립된 의료시설에서 의사소통에 접근을 위한 [권장사항](#) 을 참조;
- 전형적 미디어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상 메세지 및 공공정보에 접근하도록 제공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접근 제공을 위해 미국수화(ASL), 자막, 음성지원, 원고 그리고 필요시 음성 묘사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수단을 고려하고; 다수의 언어로 영상에 대한 자막 및 음성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 비상사태 관련 정보가 있는 사이트에 장애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이는 자막처리된 영상 및 화면읽기 장비나 기타 지원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상을 읽기 위한 대안적 태그의 사용을 포함한다. [미법무부\(DOI\)의 접속가능 기술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참조.

포용적인 계획수립, 대응 및 복구

- 인종, 종교, 출신국가, 성별, 연령, 신체장애, 영어능숙도 또는 경제적 지위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법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보장. 이는 특정한 인종 또는 민족 그룹들이 다른 그룹들보다 더 코로나19바이러스를 전염하게 하는 (또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으며 특정한 인종 또는 출신국가의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적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단체 및 사회서비스 공급단체 및 전체 지역사회에 메세지 전달을 공유함에 있어 협력하며, 이는 장애자, 영어의 능숙한 사용에 제한이 있는 개인, 저소득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 그리고 다양한 신앙 단체 등을 포함하며;
- 치료에 있어 종교적 요청을 고려하고 사회활동 격리(소셜 디스턴싱) 지침하에 직업종교인 또는 신앙에 대한 확장된 종교활동에 접촉할 수 있도록 감안하며;
- 공공자금지원의 지역적 독립생활 센터, 보호 및 지지 단체, 대학의 장애 센터, 대응 및 복구 기간동안 장애자 및 고령층의 필요사항을 부응하기 위한 노화지원 지역기관 등과 같은 (이러한 단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정부단체들과 교류한다:
 - [독립적 생활을 위한 국가 위원회\(National Council on Independent Living\)](#)
 - [장애자권리 국가네트워크\(National Disability Rights Network\)](#)
 - [대학교 장애센터 협회\(Association of University Centers on Disabilities\)](#)
 - [국가 노화지원 지역기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
- 장애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의료기관 및 개별적 보조서비스 공급기관의

4월13일 25

개인보호장구(PPE)에 대한 필요사항을 고려하며;

- 임시병원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시험검사 장소나 위치를 식별함에 있어 여러 계층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필요를 고려하고;
- 개인의 장애, 연령, 소득수준 또는 제도적 보호하의 여하한 편견에 기반한 개인 삶의 질 혹은 사회의 관련 가치에 대한 일반화 및 판단을 포함한 고정관념 및 편견을 탈피하여 각 개인의 개인화된 고려사항을 감안한 후, 재해시 표준의료 서비스(Crisis Standards of Care) 의거한 의료서비스 거부 및 산소호흡기 배부 등을 포함한 의료치료에 대한 결정을 한다. 개인화된 고려사항은 현재의 객관화된 의료적 증거 그리고 발견되지 않는 가정에 반대되는 환자 자신이 표현하는 의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언어적 접근

- 코로나바이러스 시험검사 장소 및 임시 병원에서 유자격 통역관 및 번역된 자료의 사용을 포함하여, 능숙한 영어사용에 한계(LEP)가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이나 의료행위에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언어적 접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가능 <https://www.lep.gov/emergency-preparedness>; 그리고
- 평범한 언어는 물론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전염병 영향을 받은 경우 비상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카운티 별 상호교류형 지도제작 도구음 참조 <https://www.lep.gov/maps>.

신체적 접근성

- 장애자가 시험검사 장소나 임시 병원을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 FEMA 시민평등권 자문관이 검사 장소에서 지원; OER 시민평등권 자문관이 FEMA지역별 지청에 배치되어 안내, 기술적 지원, FEMA 및 SLTT의 외부지향적 시민평등권 의무의 준수 및 집행을 제공한다.

환경적 공정성

- 대응 및 복구 기간동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의 개발 및 시행에 있어 소수집단 지역사회 및 저소득층과의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 의료폐기물 처리와 같은 결정에 있어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에 불균형적 환경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시민평등권 불만 및 우려

일반 국민은 FEMA활동 혹은 FEMA 예산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과 관련된 시민평등권 불만사항을 아래와 같이 OER 부서로 신고할 수 있다:

- FEMA 시민평등권실(Office of Equal Rights: OER) 전화202-212-3535 그리고 1번 선택; 또는텔레타이프라이터 사용자는 전화 800-462-7585
- FEMA 시민평등권실 이메일 연락처: FEMA-CivilRightsOffice@fema.dhs.gov

4월13일 35

코로나19바이러스 대응 기간동안 시민평등권 보장

- FEMA 시민평등권실로 우편에 의한 불만 신고:

FEMA Office of Equal Rights
C Street, SW, Room 4SW-0915
Washington, DC 20472-3505

시민평등권부서 및 여타 연방기관에 불만신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미법무부\(DOJ\) 연방기관의 시민평등권 부서 명단](#)

참고 자료

- 효과적인 의사소통 접근
-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병원 시설에서 청각장애자나 청각이 불편한 사람과의 의사소통](#)
-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신체거동 장애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효과적인 의사소통 요청사항](#)
- [환자에 대한 의사소통 제공단체 참고자료](#)
- [전국 청각장애자 협회](#)
- [우선적 의사소통을 위한 참고자료](#)
- 웹사이트 접근: www.w3.org
- 포용적인 계획수립, 대응 및 복구
- [불명예 및 코로나19바이러스 감소에 대한 CDC 발행책자](#)
- [비상사태 대비, 대응, 해소 및 복구 활동에 있어 제 6조\(Title VI\) 준수에 대한 연방기관 합동 안내서](#)
- 언어적 접근
- 국토안전부(DHS)의 "[나는 말한다\(I Speak\)](#)" 책자

FEMA 서류의 복사본을 다른 형태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800-621-3362로 전화 (텔레타이프라이터 전화: 800-462-7585).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소통하며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 800-621-3362로 전화하면 (텔레타이프라이터 전화: 800-462-7585) 무료로 통역관과 연결되는 도움 지원이 가능함.

For copies of FEMA documents in alternative formats, please call 800-621-3362 (TTY: 800-462-7585).

If you speak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and need help with this document, please call 800-621-3362 (TTY: 800-462-7585) and you will be connected to an interpreter who will assist you at no cost.

Si habla un idioma diferente al inglés y necesita ayuda con este documento, llame al 800-621-3362 (TTY: 800-462-7585) y lo contactaremos con un intérprete que lo ayudará sin costo alguno para usted.

4월13일 45

Если вы не говорит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и нуждаетесь в помощи,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800-621-3362 (TTY: 800-462-7585). Вас соединят с переводчиком, который бесплатно поможет вам.

Se você fala um idioma além do inglês e precisa de ajuda em relação a este documento, ligue para 800-621-3362 (TTY: 800-462-7585) e você será conectado a um intérprete que irá ajudá-lo sem nenhum custo adicional.

Nếu quý vị nói một ngôn ngữ khác Tiếng Anh và cần giúp đỡ với tài liệu này, hãy gọi 800-621-3362 (TTY: 800-462-7585) và quý vị sẽ được kết nối với một thông dịch viên, là người sẽ trợ giúp miễn phí cho quý vị.

إذا كنت تتكلم لغة غير الإنكليزية واحتجت إلى مساعدة مع تلك الوثيقة، يرجى الاتصال بالرقم 800-621-3362 (الطباعة ن بعد: 800-462-7585) وسيتم وصلك مع مترجم شفهي سيقدم لك المساعدة مجاناً.

Si vous parlez une langue autre que l'anglais et que vous avez besoin d'aide en rapport avec le présent document, veuillez composer le 800-621-3362 (numéro TTY pour les malentendants : 800-462-7585) pour qu'un interprète soit gratuitement mis à votre disposition.

Si w pale yon lang ki pa lang Angle e ou bezwen èd avèk dokiman sa a, tanpri rele 800-621-3362 (TTY: 800-462-7585) epi yo pral konekte w ak yon entèprèt ki pral ede w, gratis.

英語以外の言語でこのページの詳細をお知りになりたい方は、お電話で800-621-3362 (TTY: 800-462-7585) 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無料で通訳をご利用いただけます。

Kung nagsasalita ka ng wikang bukod sa Ingles at nangangailangan ng tulong sa dokumentong ito, mangyaring tumawag sa 800-621-3362 (TTY: 800-462-7585) at maikokonekta ka sa isang interpreter (tagasalin sa wika) na tutulong sa iyo nang walang bayad.

如果您使用除英语之外的其他语言并且就本文件需要帮助，请致电800-621-3362（听障及语障用户（TTY）：800-462-7585），您将与翻译人员联系，该翻译人员将为您提供免费帮助。